신용카드 이용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이용자]

『신용카드 이용자』 콘텐츠는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확인사항과 발급요건 및 절차를 설명하고, 할부거래, 대금결제, 현금서비스 · 카드론, 카드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신용카드가 도난 · 분실, 명의도용 등으로 불법 사용되거나 정지·해지되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방법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신용카드 이용자 1
1. 신용카드 발급하기 4
1.1. 신용카드의 이해 4
1.1.1. 신용카드의 종류 및 거래구조 4
1.2. 신용카드의 발급 8
1.2.1. 발급 전 확인사항 8
1.2.2. 발급요건 및 발급절차 10
1.2.3. 약관제공 의무 13
2. 신용카드 이용하기 16
2.1. 신용카드 결제 16
2.1.1. 준수사항 및 이용한도 조정 16
2.1.2. 결제대금 납부 18
2.1.3. 신용카드 할부거래 22
2.2. 신용카드 금융서비스 이용 26
2.2.1.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26
2.3. 신용카드 혜택과 활용 27
2.3.1. 카드포인트 27
2.3.2. 신용카드와 세금 29
3. 신용카드 불법사용과 해지 등 33
3.1. 신용카드 불법사용 33
3.1.1.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33
3.1.2. 신용카드 위조·변조 및 명의도용 등 34
3.1.3. 신용카드회원의 부정사용 35
3.2. 신용카드 정지 및 해지 36
3.2.1. 신용카드 이용 정지 및 해지 36
4. 신용카드 분쟁해결 40
4.1. 분쟁조정기관 및 법원을 통한 해결 40
4.1.1. 분쟁조정기관을 통한 해결 40
4.1.2.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한 해결 42

1. 신용카드 발급하기

1.1. 신용카드의 이해

1.1.1. 신용카드의 종류 및 거래구조

신용을 담보로 결제하고 혜택까지 누리는 “신용카드”

“신용카드”란?

▪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포함)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참조).

▪ 신용카드는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참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

- 금전채무의 상환
- 다음의 금융상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2. 예금, 적금 및 부금
  3. 위 1. 및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 포함)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함]
-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함]
-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상품권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함]을 체결하지 않은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선불카드 금액,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 및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함)를 초과한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함)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따른 금전의 지급

신용카드의 종류

▪ 신용카드는 발급주체, 사용가능 지역, 신용카드업자, 등급 등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됩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신용카드의 종류 참조).

구분 기준	종류	내용
발급주체	개인카드	•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 • 본인카드와 가족카드로 나눌 수 있음
	법인카드	• 기업기관·협회·기타 사업자 등이 발급받는 카드로, 법인카드의 사용자는 법인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법인 소속 임직원 • 법인공용카드와 법인개별카드로 나눌 수 있음
사용가능 지역	국내 전용카드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카드
	해외 겸용카드	• 국내 및 해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카드
	※ 국내 전용카드에 비해 해외 겸용카드는 연회비가 추가 징수되므로, 해외에서 카드 이용이 필요 없는 소비자는 국내 전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	
신용카드업자	전업카드사	• 신용카드업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
	겸영은행계 카드사	• 은행으로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에서 신용카드업을 하는 회사
	유통계 카드사	•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어 신용카드업을 하는 회사(예: 백화점)
	※ 전업카드사와 겸영은행계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카드 간에는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지만, 유통계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카드는 해당 유통회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음	
등급	일반카드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드로 플래티늄·VVIP 등급 카드 이외의 카드를 모두 포함
	플래티늄(프리미엄)카드	• VVIP 카드와 일반 카드의 중간 등급에 위치한 카드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
	VVIP카드	• CEO, 대학학장, 장관급 공무원 등으로 카드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급대상을 선정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비교

▪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와 비교하여 이용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신용이 공여(供與)되어 선구매 후결제, 할부결제 및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그 밖의 비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신용카드의 종류 참조).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가능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직불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발급처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	은행	신용카드사
이용한도	신용한도 이내	예금잔액 이내 (필요시 30만원 이내 신용한도 부여 가능)	예금잔액 이내	충전잔액 이내
결제	선구매 후결제 (지정결제일)	구매즉시	구매즉시	구매즉시
할부·현금서비스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 “체크카드”란?

-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며,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

※ “직불(直拂)카드”란?

-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함)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

※ “선불(先拂)카드”란?

-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함)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신용카드와 간편결제(각종 OO페이, 앱카드 등)의 관계

▪ 간편결제(페이, 앱카드 등)는 신용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지급수단이나 계좌 정보를 미리 등록한 후 비밀번호, 지문 또는 얼굴인식 등의 인증수단을 거쳐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금융결제원, 『2024 지급결제 A to Z』 264쪽 참조).

▪ 간편결제에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해 사용하는 경우, 실제 결제수단은 신용카드이므로 이는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결제를 실행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 간편결제 유형과 신용카드와의 관계

유형 (사업자 기준)	예시	서비스 형태	신용카드와의 관계
금융회사	**(은행) KB pay, 신한 SOL페이 등 (카드사) 현대·삼성 앱카드 등**	**지급 계좌·카드 정보를 금융회사 앱에 사전 등록한 후 간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결제**	카드 정보 등록 후 결제 실행 통로로 사용
전자금융업자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네이버페이 포인트, 카카오페이 머니, 토스페이머니 등	**타 지급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 후 간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결제**	신용카드와 별개
전자금융업자 중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PG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SSG페이, 11PAY 등	**지급 계좌·카드 정보를 PG사에 사전 등록한 후 간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결제**	카드 정보 등록 후 결제 실행 통로로 사용
휴대폰제조사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지급카드 정보를 휴대폰 단말기에 사전 등록한 후 휴대폰을 이용하여 결제**	카드 정보 등록 후 결제 실행 통로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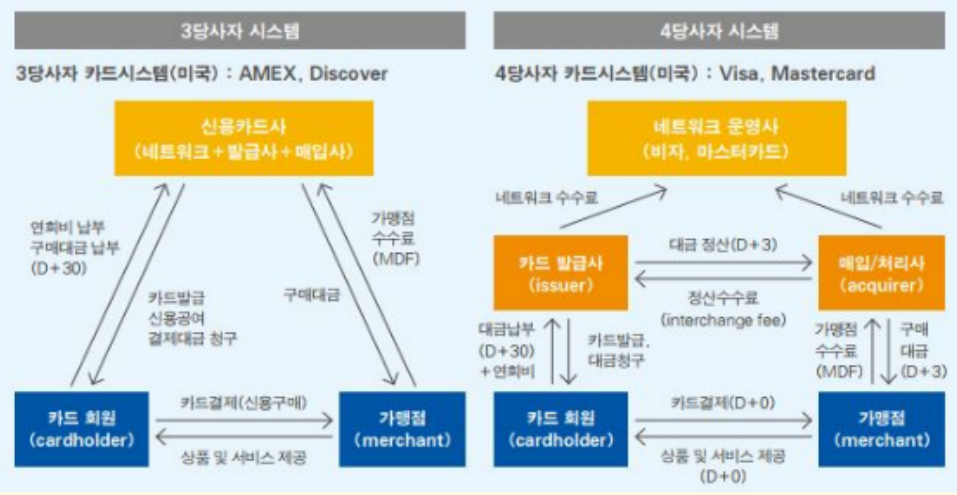
[출처: 금융결제원, 『2024 지급결제 A to Z』 266쪽 참조]

왜 환불은 가맹점에, 연체는 카드사에 물어야 할까? "신용카드의 당사자 구조"

3당사자 또는 4당사자 체제

▪ 신용카드 당사자 구조는 네트워크 참여자 수에 따라 3당사자 또는 4당사자 체제로 구분됩니다(금융결제원, 『2024 지급결제 A to Z』 61쪽).

※ 신용카드 거래구조도



[출처: 금융결제원, 『2024 지급결제 A to Z』 61쪽]

▪ 우리나라 신용카드사는 대부분 3당사자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구조에서는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발급 업무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매출전표 매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카드발급사와 매입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이들 간 정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가맹점 수수료와 신용카드회원의 연회비가 주 수입원이 됩니다(금융결제원, 『2024 지급결제 A to Z』 61쪽).

▹ (대표적 예시) 국내 신용카드사, 해외 AMEX 및 Discover

▪ 4당사자 체제는 카드발급사와 매입사가 분리되어 있어 네트워크 운영사의 카드 결제망을 통해 연결되므로, 카드발급사와 매입사 간 정산 수수료와 네트워크 운영사에 지급하는 네트워크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금융결제원, 『2024 지급결제 A to Z』 62쪽).

▹ (대표적 예시) 해외 VISA 및 Mastercard

3당사자 체제의 구성 주체: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4호).

▪ "신용카드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 본문).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또는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 단서,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제3호).

※ 이 콘텐츠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및 실무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사' 또는 '카드사'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1.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함)에게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2.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1.2. 신용카드의 발급

1.2.1. 발급 전 확인사항

신용카드 발급 전 주요 체크사항

사전 체크사항

▪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카드-가입전 STEP1.상품 소개-나에게 맞는 상품 찾기-카드 선택 시 주요 체크사항 참조].

① 본인의 소비성향을 파악하세요.
: 신용카드 상품에 따라 포인트 적립·캐시백 등의 혜택이 특화된 업종들이 있으므로, 본인의 소비성향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 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이용 시 해당 인터넷 쇼핑몰 제휴카드
항공편을 자주 이용 시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 카드

▼

② 본인의 월평균 지출액을 파악하세요.
: 무이자할부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를 받으려면 전월 이용금액이 일정액 이상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족 가능한 조건의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 연회비 부담을 고려하세요.
: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을수록 연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실제 활용 가능한 혜택과 연회비를 비교하여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 해외 이용 계획이 없다면 국내외 겸용카드보다 연회비가 저렴한 국내전용카드 선택

▼

④ 주거래 은행과 연계된 카드상품 선택 시 혜택을 고려하세요.
: 주거래 은행과 연계된 카드상품을 선택하여 신용을 쌓을 경우, 향후 해당 은행과의 거래에서 대출한도 증액이나 이자·수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⑤ 신용카드 혜택 제공조건을 확인하세요.
: 포인트 적립 및 전월실적 제외대상, 통합 할인한도 등을 확인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예시) 포인트 적립 제외대상 대학등록금, 무이자할부 결제 금액
전월실적 제외 문구 예시 “(청구)할인 받은 해당 매출 건 전체”
통합 할인한도 예시 OO마트 결제금액 20% 할인(월 통합 할인한도 2만원)

※ 주요 신용카드사의 대표 카드 상품은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gongsi.crefia.or.kr)-금융소비자정보-카드다모아>에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신용카드 신청방식과 불법모집 주의사항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방식

▪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앱 또는 전화를 통해서 본인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카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카드-가입전 STEP1.상품 소개 -상품에 대한 이해-가입 채널에 따라 달라요 참조).

▪ 오프라인으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신용카드 모집인 또는 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카드-가입전 STEP1.상품 소개 -상품에 대한 이해-가입 채널에 따라 달라요 참조).

> ※ “신용카드 모집인”이란?
>
>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
> 신용카드 모집인은 카드사를 통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現 여신금융협회)에 모집인 등록을 해야 하며, 카드 신청을 받을 때에 신청인에게 자신이 카드를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리고 신청서에 모집인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1항·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제1항제1호·제4호 참조).

신용카드 모집인을 통해 신청 시 불법모집 주의사항

▪ 신용카드 모집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법 모집행위에 유의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제3호,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및 제14조의5제2항제1호·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1호·제2호, 제6조의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함)의 10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 평균연회비는 1만원으로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

-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가 금지되는 “길거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사도 또는 통로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3).

  1.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2.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 ※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및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2. 발급요건 및 발급절차

신용카드 발급요건

나이·소득·신용도 등 신용카드 발급요건

▪ 신용카드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2항·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1항·제2항·제3항).

▹ 본인이 신청할 것

▹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않을 것

√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保證)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信用供與額)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나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에 상환(償還)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의 존재 여부

√ 채무가 상환되거나 변제(辨濟)된 경우에는 그 상환방법이나 변제방법

▹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19세(「민법」 제4조)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도 발급

√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在職)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18세 이상만 해당)

√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로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12세 이상만 해당)

▹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이 상위 100분의 93에 해당 하거나 장기연체가능성이 1만분의 65 이하에 해당할 것(「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로서 신용카드회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월 최고 30만원 범위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한 경우(「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제2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단서에 따라 성년 연령 미만인 사람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 위의 “개인신용평점”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함)가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제1호 참조).

▹ 본인 여부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것

신용카드 발급절차

※ 신용카드 발급절차도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카드-가입시 STEP1.가입 안내-카드에 대한 길라잡이-한눈으로 보는 카드가입 안내 참조]

일반적인 신용카드 발급절차

▪ 신용카드 발급절차는 카드사마다 일부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급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카드-가입시 STEP1.가입 안내-카드에 대한 길라잡이-한눈으로 보는 카드가입 안내 참조].

① 본인확인
: 신용카드 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카드사는 이를 확인합니다.

▼

② 발급불가조건 조회
: 카드발급 상담사가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는 것은 미성년자 여부, 거래정지 등재 여부, 연체 여부 등 간단한 발급불가조건만을 확인한 결과이며, 실제 카드 발급 여부는 이후 결제능력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③ 카드발급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성명, 주소, 연락처, 결제계좌, 요청한도 등을 기재하고 본인이 서명한 카드발급 신청서와 신분·직업·소득 확인 등 결제능력 심사에 필요한 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④ 결제능력 심사
: 카드사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카드발급 신청자의 결제능력,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카드발급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

⑤ 카드 발급 및 수령
: 심사를 거쳐 카드 발급이 승인되면 신청인이 영업점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특송 등을 통해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절차

Q. 유효기간이 다가오는 신용카드의 갱신(更新) 또는 대체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회원의 새로운 신청이 있어야 발급되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카드는 예외적으로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회원의 최근 이용 여부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 갱신·대체 발급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1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6).

1.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

   해당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전화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해당 신용카드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발급 시 이용한도 산정

이용한도 산정

▪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신규가입을 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신용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신용카드회원에게 별도로 통보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1항).

▪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의 월 가처분소득[(연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12]과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부여합니다(「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5조 및 제8조제1항 본문 참조).

이용한도 통지 및 확인

▪ 신용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전화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5항).

1.2.3. 약관제공 의무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서류 제공의무

서류 제공 사항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約款)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신용카드회원에게 서면, 팩스,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함)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하며,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요청한 때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5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7항 및 제6조의11제1항).

-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결제방법, 결제일, 신용카드 유효기간 및 개인신용평점 등 거래조건
-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위조·변조가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에게 고의,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방식 및 연회비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약관, 핵심설명서 및 상품설명서를 통한 제공

▪ 위의 서류 제공 사항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알아두어야 할 제반사항과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이용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약관, 핵심설명서 및 상품설명서에 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 전 각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카드-가입시 STEP2.계약안내-계약관련 서류 확인하세요-주요서류 및 서식 참조].

※ "핵심설명서"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서류이며, "상품설명서"는 신용카드 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안내하는 서류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카드-가입시 STEP2.계약안내-계약관련 서류 확인하세요-주요서류 및 서식 참조].

함께 지키는 약속 "약관", 소비자를 보호하는 설명의무와 금지조항

"약관"이란?

▪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약관의 적용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민법」 제105조),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카드회원이 동의한 약관은 이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 다만,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 신용카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는 회원인 카드사들의 자율규제 차원에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각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을 마련할 때 참고하는 권장사항일 뿐이므로 각 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약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 신용카드사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의 설명의무 등

▪ 신용카드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 신용카드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본문).

▹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단서).

▪ 신용카드업자가 위 약관의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금지되는 약관조항

▪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 신용카드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신용카드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신용카드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2. 신용카드 이용하기

2.1. 신용카드 결제

2.1.1. 준수사항 및 이용한도 조정

신용카드 이용자 준수사항

카드제시 및 서명

▪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 국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신용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신용카드회원의 피해를 신용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8조제1항 단서).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 신용카드는 양도(讓渡)·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 이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3호).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 준수사항

결제 거절 및 불리한 대우 금지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4호).

신용카드 본인 사용 확인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2항).

신용카드회원 정보보호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가맹점수수료 전가(轉嫁) 금지

▪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5호).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

이용한도 조정

▪ 신용카드사는 카드의 유효기한 이내 및 유효기한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해 줍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2항).

이용한도 증액

▪ 신용카드사는 이용한도 증액 시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본문 참조).

▹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 증액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단서).

▪ 신용카드사는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본문 참조).

▹ 다만, 회원이 사전에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신용카드사에 신청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본문 참조).

이용한도 감액

▪ 신용카드사는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 줍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4항).

이용한도 통지 및 확인

▪ 신용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5항).

※ 신용카드사의 이용한도 책정 시 준수사항

Q.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자유롭게 정하거나 증액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신용카드사가 책정하지만, 임의로 정하거나 과도하게 높일 수 없고 책정으로 인해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제5호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제3항).

1. 회원 등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지 않을 것(다만, 회원이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청한 경우는 제외함)
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평가한 회원의 월 평균결제능력과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
3. 위 2.에 따른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심사기록과 자료를 보관할 것

2.1.2. 결제대금 납부

신용카드 대금결제

대금결제 방법 및 대금결제일

▪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즉시결제,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 등]으로 결제해야 하며, 신용카드사는 대금결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상품설명서 등에 안내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1항).

▪ 신용카드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1항 전단 참조).

해외 이용 시 대금결제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신용카드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2항 전단).

▹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 또는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해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2항 후단).

▪ 위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국내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가 포함되며, 이 경우 국내 카드사의 해외서비스수수료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3항).

※ 신용카드 해외결제 시 유용한 “해외원화결제(DCC) 사전차단 서비스” 및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

[해외원화결제(DCC) 사전차단 서비스]

√ 해외거래에서 원화(KRW)로 결제 시 추가 수수료 (약 3~8% 수준) 발생 부담을 방지하고자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

√ 해외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회원은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중 편리한 방법으로 사전 차단 신청 가능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

√ 신용카드의 해외 매출 승인 시 법무부 및 출입국관리소의 협조로 회원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여 국내 거주 회원카드의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해주는 서비스

√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해외출입국 정보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 신청 가능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카드-가입후 STEP1.유지 및 관리-계약 유지 시 주의사항-상황별 알아둘 사항 2.해외이용시 참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그 밖의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7항 전단).

▹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제ㅇ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통지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7항 후단).

※ "매출일로부터 제ㅇ영업일 이내"인지 여부는 각 신용카드사의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각 신용카드사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도래 전의 대금지급

▪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10항).

※ 대금결제 금액 중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월(移越)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란?

  신용카드대금 중 일정금액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대금에 대한 상환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는 신용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결제방식입니다.

  * 5만 원 이상이고 이용금액의 10% 이상의 최소결제비율 이상 등

- 리볼빙 결제 이용여부

  리볼빙 서비스는 일정 신용도 이상의 회원만 이용 가능하고, 리볼빙 이용 중에도 회원의 신용도 하락시 현금서비스 이용분 등에 대해서는 리볼빙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리볼빙 결제 유의사항

  결제대금 부담이 있을 경우 리볼빙은 연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카드-가입시 STEP3.계약사항 확인-나의 계약 조건 check!-상품별 개별사항 3.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참조]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

대금연체 시 지연배상금의 부담

▪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보다 적어 대금결제일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9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 결제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 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하는 것을 말함)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계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 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4항 본문).

※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 365(윤년은 366)

▹ 다만, 결제일 다음 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4항 단서).

연체이자율의 계산 및 제한

▪ 위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5항 본문).

▹ 다만, 카드사는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를 때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5항 단서).

※ 본인에게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이용대금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gongsi.crefia.or.kr)-신용카드상품 비교공시-상품별 수수료율>를 통해서 개별회사의 수수료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 대금연체와 신용도

Q. 카드대금을 연체하면 바로 신용도가 떨어지나요?

A. 아니요. 일반적으로 연체금액 10만원 미만 연체기간 5영업일 미만인 정보는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 연체기간이 5영업일 이상이면 연체정보가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의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데,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단기연체정보로, 연체 초기 단계의 신용평가에 활용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대금을 5만원 이상 3개월(90일) 이상 연체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어 금융회사 간 공유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신용평점 하락을 넘어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거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한국신용정보원-업무소개-일반신용정보-신용도 판단정보 상세-연체정보-신용카드 대금연체 참조).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11. 2.) '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개인신용평가관리 관련 유의사항-4.' 참조]

신용카드 대금의 자동이체결제

자동이체결제 방식

▪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신용카드 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계좌(다만, 통장분실·도난 그 밖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8조제1항).

▪ 위의 자동이체결제 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8조제2항).

▪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8조제5항).

잔액부족으로 자동이체 결제 실패 시 처리절차

▪ 이용대금결제일 현재 잔액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 영업일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결제하지 않은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위의 자동이체결제 방식의 방법에 따라 인출하여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8조제3항).

영업 마감시간 이후 결제대금 입금

▪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원은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즉시결제 또는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를 통해 당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8조제4항).

신용카드 대금의 할부결제

할부거래 시 지급금액

▪ 할부의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월간단위)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11항).

> ※ 할부거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신용카드 이용하기-신용카드 결제-신용카드 할부거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및 결과의 통지

▪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경위 및 신용카드 사용일시·사용내역·사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함) 또는 전화로 통지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제1항).

▪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0항).

금융감독원 조정요청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조사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발생 정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제2항).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신용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제4항 본문).

▹ 다만, 신용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제4항 단서).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용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제5항 본문).

▹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제5항 단서).

※ 금융감독원의 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신용카드 분쟁해결-분쟁조정기관 및 법원을 통한 해결-분쟁조정기관을 통한 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3. 신용카드 할부거래

목돈이 부담될 때 나눠갚는 “신용카드 할부계약”

“신용카드 할부계약”이란?

▪ 신용카드 할부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할부계약”을 말합니다.

▪ “간접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의 대금(代金)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등의 대금”이라 함)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등의 공급”이라 함)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 할부계약의 당사자

- “소비자”란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즉, 소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용카드회원을 말합니다.
- “신용제공자”란 소비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즉, 신용제공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용카드업자를 말합니다.
- “사업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란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즉, 사업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합니다.

할부거래 시 수수료

▪ 할부 결제는 할부기간에 걸쳐 동일 금액을 분할하여 지불하는 형태로 이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며, 할부수수료율은 이용 개월수와 회원별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카드 상품별 이자율 수수료 등 각종 거래조건-3. 할부이자율(수수료율) 참조].

※ 할부수수료 = 할부잔액 × 할부수수료율 × 사용일수 ÷ 365(할부잔액 = 이용원금 기결제원금)

※ 본인에게 적용되는 할부수수료율은 이용대금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gongsi.crefia.or.kr)-신용카드상품 비교공시-상품별 수수료율>을 통해서 개별회사의 수수료를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마음을 바꿔 할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할부철회권”

"할부철회권"이란?

▪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

행사범위

▪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해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

구분	할부철회권 행사기간
1. 재화등의 제공이 계약서 발급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2. 재화등의 제공이 계약서 발급보다 늦은 경우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3.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4.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5.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 및 2.의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6.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7.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제외사유

▪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함)
2. 사용 또는 소비에 따라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재화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 「선박법」에 따른 선박

√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냉동기, 전기냉방기(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 및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일반 할부가격의 경우에는 10만원 미만)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

▪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6항).

행사방법

▪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위에 따른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단서).

1. 신용제공자가 청약철회의 기간 이내에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2. 신용제공자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로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른 할부금청구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청받은 경우

물건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면 잔여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할부항변권”

“할부항변권”이란?

▪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 참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참조).

행사사유

▪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

▹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금지

-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 이를 위반해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6호).

※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의 비교

구분	할부철회권	할부항변권
적용대상	결제한 재화등의 하자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철회 가능	결제한 재화등이 당초의 설명과 다르거나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요청기간	구입한 날 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기간 중 언제든지 행사 가능
공통요건	할부거래금액 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2개월 이상인 거래로서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거래	
행사방법	철회·항변요청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뒷면 참조) 작성 후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에 발송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카드-가입시 STEP3.계약사항 확인-나의 계약 조건 check!-공통사항 3.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 참조]

할부금 지급을 미루거나 외국으로 이주 시 한 번에 갚아야 하는 “할부금의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익의 상실”이란?

- 소비자가 할부거래에서 재화등의 대금을 할부로 지급할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고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참조).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 신용카드회원 등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해서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緣故關係)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할부수수료의 공제

▪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기한이익의 상실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한꺼번에 지급받을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할부수수료는 일단위로 계산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남은 할부금을 앞당겨 갚을 수 있는 "할부금의 기한 전 지급"

할부금의 기한 전 지급

▪ 소비자는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소비자가 이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2.2. 신용카드 금융서비스 이용

2.2.1.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신용카드 한도 이내에서 단기간 대출을 받는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란?

▪ 대출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카드사가 사전에 부여한 한도 내에서 카드사의 홈페이지, ARS, 현금지급기(CD/ATM기)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자금대출 서비스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1항제1호 참조 및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신용카드 관련 주요 용어 안내-5.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참조].

수수료율 및 상환방식

▪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개인 신용도 및 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 대출보다 이용이 편리한 반면 이자율 수준은 높은 편입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카드 상품별 이자율·수수료 등 각종 거래조건-4.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율].

▪ 현금서비스 이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제일에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신용카드 관련 주요 용어 안내-5.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용카드 한도와 별도로 장기간 대출을 받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카드론"이란?

▪ 비교적 장기간 목돈이 필요한 신용카드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대출 서비스이며, 대출한도는 신용카드회원의 신용등급과 과거 카드 결제실적 등에 따라 정해지고 대출기간은 일반적으로 2~24개월로 현금서비스에 비해 장기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1항제1호 참조 및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신용카드 관련 주요 용어 안내-6.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참조].

수수료율 및 상환방식

▪ 카드론 수수료율은 신용카드회원의 신용도 및 카드론 이용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카드 상품별 이자율·수수료 등 각종 거래조건-5.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율].

▪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방식(매월 동일한 금액의 원리금 납입), 만기 일시 상환방식(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원금 납부),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상환방식(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한 후 나머지 기간 동안 매월 원리금 납부) 등으로 구분됩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신용카드 관련 주요 용어 안내-6.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 본인에게 적용되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수수료율은 이용대금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gongsi.crefia.or.kr)-신용카드상품 비교공시-카드대출·리볼빙 금리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개별회사의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 신용이 나아졌다면 수수료율을 낮춰달라고 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카드사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받아 카드사와 대출계약을 맺은 신용카드회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8제1항).

-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심사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카드사는 해당 요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8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6제1항).

-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결과 회신

▪ 카드사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8제3항).

2.3. 신용카드 혜택과 활용

2.3.1. 카드포인트

신용카드 포인트

“신용카드 포인트”란?

▪ 신용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결제금액의 일부를 적립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 적립되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

신용카드가이드-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방법-1. 포인트란 무엇인가요?).

※ “先(선) 포인트 서비스”와 비교

Q. 신용카드 先(선) 포인트 서비스는 일반적인 카드 포인트제도와 다른건가요?

A. 네.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는 카드를 쓴 만큼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인 반면 “先(선) 포인트 서비스”는 앞으로 쌓일 포인트를 미리 당겨쓰는 방식입니다.

“先(선) 포인트 서비스”는 신용카드사가 일정 포인트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미리 지급해주고 향후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해당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데, 상환기간 내에 적립된 포인트가 미리 지급받은 포인트에 미달될 경우에는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장점은 구매 시 결제 부담을 줄이고 포인트를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약정한 포인트를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및 채권추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신용카드 관련 주요 용어 안내-4. 先(선) 포인트 서비스]

포인트제도 명시

▪ 신용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에게 알려줍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제2항).

-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 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 포인트의 종류
- 피상속인의 포인트 상속절차 및 상속 포인트 사용방법

포인트제도 변경

▪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제4항).

- 신용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같은 종류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제휴업체가 신용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다만,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제4항).

소멸 예정 포인트 통지

▪ 신용카드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제7항).

신용카드 해지 시 포인트

▪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제13항 전단).

※ 포인트 활용방법을 알려주세요!

√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사용하세요.

√ 현금으로 돌려받으시거나 이용대금 결제에 활용하세요.

√ 카드사의 '포인트 전용 쇼핑몰'에서 쇼핑시 이용하세요.

√ 예금·적금·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도 가능합니다.

√ 포인트 기부하고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세요.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에 대한 후원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포인트 활용방법은 각 카드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해당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방법]

※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https://www.cardpoint.or.kr)를 통해 본인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보다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 가능 포인트에 대해 일괄 계좌입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2. 신용카드와 세금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참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금액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 직불카드·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는 사용자가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의 명의가 확인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가 무기명인 경우(이하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함)에는 ①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전자금융거래업자·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이거나, ②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개설한 실제사용자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제6항·제14항·제15항).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현금영수증(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 다음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등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봄)

- 자동차를 신용카드등으로 구입하는 경우(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비 및 제59조의4제3항제2호다목 본문에 따른 수강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중고자동차는 제외)의 구입비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기관, 보건소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수수료·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고향사랑 기부금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그 밖에 위와 비슷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 ※ 구체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계산방식은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132-1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및 과태료 납부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

▪ 납세자는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 참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납부

▪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을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1항제3호가목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제외한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 본문 및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신용카드를 이용한 관세납부

▪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세액 포함)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8조제7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제1항).

▪ 신용카드에 의한 관세납부 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제3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납부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인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1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 신용카드에 의한 과태료납부 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금액(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1조의2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3. 신용카드 불법사용과 해지 등

3.1. 신용카드 불법사용

3.1.1.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신용카드 도난·분실 신고

신고방법

▪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1항 후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4항 참조).

▪ 회원의 도난·분실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4항).

도난·분실 시 신용카드사의 책임

신용카드사의 책임

▪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항).

▪ 신용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제1항).

신용카드사 책임의 예외

▪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3항 본문).

▹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3항 단서).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신청

▪ 전화 또는 서면신고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해야하며, 이 경우 회원은 도난·분실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3항에 따라 회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2항 본문).

▹ 다만,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일정금액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2항 단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3항).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했으나 회원 본인의 신용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했거나, 회원이 서명을 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으나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
4. 신용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회원이 과실로 신용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3.1.2. 신용카드 위조·변조 및 명의도용 등

신용카드 위조·변조, 명의도용 등에 대한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신용카드사의 책임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신용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5항).

- 위조(僞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 ※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
>
> -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3. 사고 발생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신용카드회원 등과 체결한 경우
> 4. 신용카드회원등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
> 5. 제3자가 권한 없이 신용카드회원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6. 신용카드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신용카드회원등이 위의 6.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9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신용카드사 책임의 예외

▪ 위 신용카드업자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위 1. 및 2.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해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6항).

▪ 다만, 이러한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것만 해당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7항).

※ 신용카드 명의도용 예방

Q. 명의도용 금융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루어지는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주요내용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 실행을 전 금융권에서 차단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나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수익 경로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서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

√ **(오픈뱅킹 안심차단)**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

▪ 서비스 신청방법

현재 이용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2. 10.) ‘온 가족이 모인 설 명절, 보이스피싱 예방 행동수칙을 기억하세요!’6-7쪽 참조]

3.1.3. 신용카드회원의 부정사용

지불능력·의사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

지불능력·의사 없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 판례

▪ 판례는 “피고인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라고 판시하여 물품구입행위와 현금서비스에 대해서 모두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6.4.9. 선고 95도2466 판결).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일명 “카드깡”)

※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일명 “카드깡”) 예시

카드깡은 실제 물품·서비스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로 매출을 만들어 현금을 융통하는 불법 행위를 뜻합니다.

카드깡 수법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결제를 진행하고 결제금액의 일부(약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7. 24.) ‘저금리 대출,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업체를 주의하세요!’3쪽 참조]

융통 및 중개·알선한 자의 처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
-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 신용카드의 질권설정 금지 등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불이익

▪ 카드깡 업체뿐만 아니라 이용한 신용카드회원도 신용카드 거래정지 또는 이용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7. 24.) ‘저금리 대출,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업체를 주의하세요!’3쪽 및 9쪽 참조].

3.2. 신용카드 정지 및 해지

3.2.1. 신용카드 이용 정지 및 해지

신용카드 정지 및 해지 사유

신용카드사의 이용 정지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제1항 본문).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 밖에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그 밖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5.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신용카드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6.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사전 고지 없이 사유 발생 당일에 고지하고 카드이용 정지 가능)

7.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위의 정지사유 중 7.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카드이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또는 전화로 이용정지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립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제1항 본문).

▹ 다만,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제1항 본문).

▹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제1항 단서).

전산망의 외부 위험에 따른 이용 정지

▪ 신용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제2항).

신용카드사의 이용 해지

▪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3제1항 본문).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파산, 개인회생 신청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3. 이민,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위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사는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위 3.의 경우 카드사는 별도의 안내 없이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3제1항 단서).

회원의 요구에 따른 이용 정지 및 해지

▪ 회원은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및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제3항 전단 및 제7조의3제2항 전단).

▪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 사용이 정지 및 해지된 이후 해외에서 카드사의 승인 없이 전표가 매입되는 거래(이하 “해외 무승인매입”이라 함)가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7조의3제2항 후단).

> ※ 정지상태 해소 시 고지
>
> Q. 신용카드 정지상태가 해소된 걸 제가 알 수 있나요?
>
> A. 네.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당일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리므로 알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제4항).

휴면카드 해지

▪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전자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정지되고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4제1항 본문).

> ※ “휴면카드”란?
>
>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가 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를 말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4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4제1항 단서).

1. 가족카드 중 본인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이나 가족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가 아닌 경우 본인회원의 카드
2.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하이패스카드), 현금인출 기능 등 카드에 부가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카드

▪ 위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4제2항).

▪ 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카드사에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4제3항).

▹ 이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다음 연도 연회비 청구일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연회비 반환규정을 준용하여 연회비를 반환해야 하며, 반환금액은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4제4항).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https://www.payinfo.or.kr)-내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휴면카드를 한번에 조회하고 해지 및 재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연회비 반환 및 반환액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1항).

▪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제2항).

- 신용카드의 발행·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에 소요된 비용
-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연회비 반환 절차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위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제3항 본문).

▪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으며,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제3항 단서 및 제5항).

위반 시 제재

▪ 위 내용을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은 신용카드업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제4호의2).

4. 신용카드 분쟁해결

4.1. 분쟁조정기관 및 법원을 통한 해결

4.1.1. 분쟁조정기관을 통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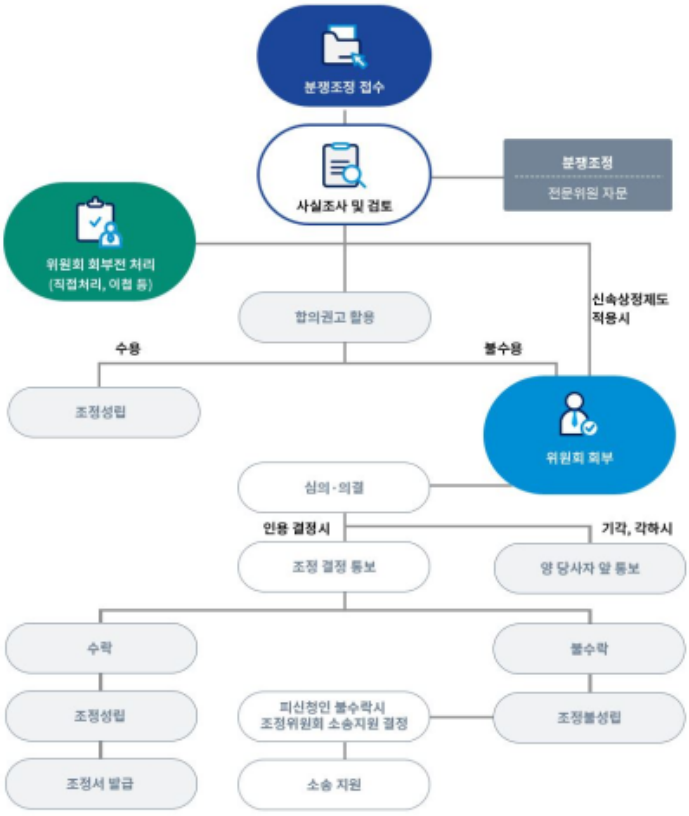
카드사와 금융관련(연체이자, 한도 등) 분쟁 시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회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6조제1항 참조).

분쟁조정 절차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소비자보호-민원·상담 조회서비스-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절차 참조]

> ※ 그 밖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유사사례, 분쟁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맹점과 거래관련(환불, 하자 등) 분쟁 시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 소비자(신용카드회원을 말함)와 사업자(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함)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0조제1항).

분쟁조정 절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분쟁조정-분쟁조정안내]

> ※ 그 밖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의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전자거래)에서 발생한 결제 관련 분쟁 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제1항).

분쟁조정 절차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https://usr.ecmc.or.kr)-분쟁조정 안내-조정절차개요도 참조]

> ※ 그 밖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usr.ecm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2.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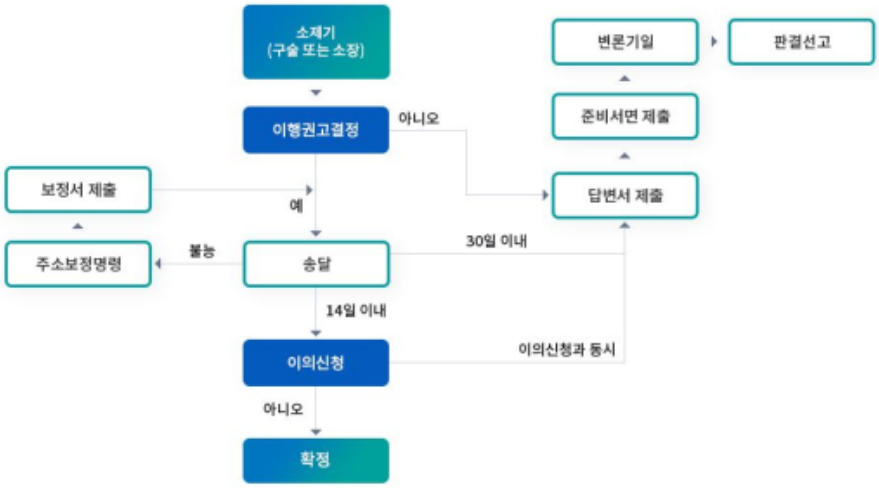
적은 금액을 간소한 절차로 해결하는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이란?

▪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및 제2조제1항 참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참조).

소액사건심판 절차

▪ 소액사건심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소액사건심판 참조]

> ※ 그 밖에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액사건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 없이 신속하게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여기에서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代替物)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지급명령 또는 독촉절차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지급명령 절차

▪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채무자인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재판적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참조).

▪ (지급명령 발령) 법원은 분쟁 당사자(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출석 없이 지급명령서를 심사해서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당사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제468조 및 제469조제1항 참조).

▪ (지급명령 확정) 채무자인 상대방(여기에서는 신용카드업자)은 지급명령에 대해 송달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및 제469조제2항 참조).

▹ 상대방이 ①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명령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참조).

▹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져서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 참조).

> ※ 그 밖에 지급명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의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지급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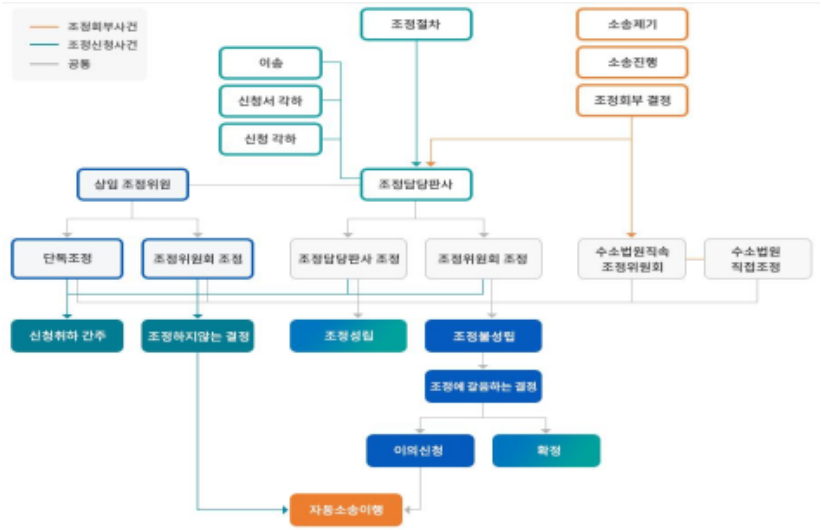
법원이 나서서 합의를 이끄는 “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 민사(民事)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調停)을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민사조정 절차

▪ 민사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민사조정절차]

> ※ 그 밖에 민사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의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민사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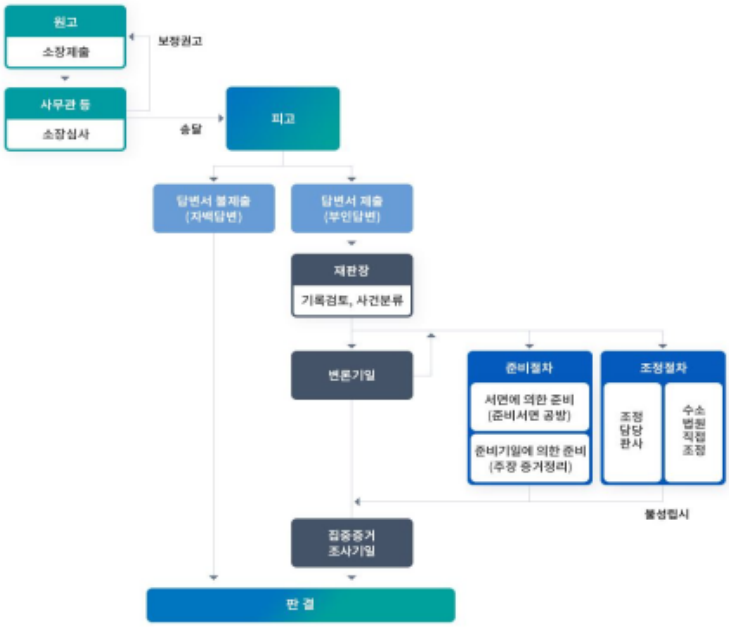
판결로 시비를 가리는 마지막 수단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법원이 재판을 통해 판결하는 것으로 조정,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사건유형별 절차안내 참조].

민사소송 절차

▪ 민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민사소송의 개요]

※ 그 밖에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